

大學의 機能과 自律性

表 時 烈
(高麗大 行政學科)

1. 머리말

요즈음 우리 社會는 오랫 동안의 權威主義 위주의 支配에서 벗어나 自由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社會 각 集團에서 自律性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오랜 동안 官主導의 획일적이고 集團的인 思考에서 탈피하여 자기 주장을 해보는 自由民主主義에로의 첫 출발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 모든 집단의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自己主張은 個性尊重의 다양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소 무질서로 인식되고 守舊主義의 반발도 적잖이 일으킨다. 특히 '自由' 추구의 상징인 大學에서 조차 自律性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이 글의 目的是 自由民主社會의 기본 요소인 自律性 確立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대학교육의 기본 정책도 정부 당국의 一方的 결정이 아닌 大學의 自律性이 第一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論理를 평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제 2 장에서 自由民主社會의 핵심 요소는 自律性임을 지적하고, 제 3 장에서 이러한 自律性은 특히 大學에서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한국 대학의 경우도 大學의 自律性에 기초하여 대학의 設立 및 定員政策이 좀더 開放化될 것을 주장한다. 제 4 장에서는 自律性을 확보하는 한 方案으로 大學의 自

己統制(self-control)를 소개한다.

우리는 소련을 비롯한 등구권 국가들의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고르바초프 개인의 리더쉽과 決斷力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나라의 국민 다수가 민주주의에로의 改革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초에 필자가 미국의 한 法科大學에서 공부할 때 法哲學을 강의하던 Stephen L. Sass 교수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는 형가리에서 태어나 오랫 동안 공산주의를 겪었고, 소련이 형가리를 침공했을 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법과대학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比較法의 元老이다. 그는 “生產手段의 私有化를 금지하는 共產主義와 치열한 自由競爭에 바탕을 둔 資本主義는 제각각 長・短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인 경험으로 보아 人間의 自律과 競爭을 강조하는 自由民主主義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요컨대 사회 복지와 국민간의 형평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낫지만, 인간의 기본적 속성 면에서 보면 自律을 존중하는 自由民主政體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비교적 우위에 있다는 고백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자유민주주의 政治體制와 자본주의의 경제 제도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자유・자본주의의 副作用인 分配의 심한 不均衡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의 경제 이념을 도입하여 經濟에 대한 국가의 規制와 調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경제 질서는 自由民主主義와 자본주의이다. 自由民主主義의 특성에 대해 윌리엄 갈스톤(William Galston)은 타협과 조정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 통치자와 국가 기관의 態意性 배제, 교육과 취업의 機會均等 그리고 個個人의 취향·재능·성격·욕구·가치관·인생 목표와 계획이 갖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성취 욕구와 능력 개발에 自由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도 自由民主社會란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껏 개성을 개발할 수 있고 또 個性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가급적 많이 부여되도록 조직된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金九 선생은 그의 自敍傳 「自凡逸志」에서 우리가 꿈꾸는 ‘自由’의 나라를 “山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山森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 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¹⁾라고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자유 민주 사회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自律的인 의사 결정 및 행동에 바탕을 둔다고 하겠다.

2. 大學의 機能과 自律性

위에서 個人은 물론 모든 社會集團의 自律性을 確立은 自由民主社會의 基本要素임을 지적하였다. 自律性 確立은 특히 大學의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大學의 機能 및 傳統과도 관계가 있다. 大學의 機能은 대체로 James A. Perkins

의 지적대로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知識의 傳達인 教育(teaching)²⁾이다. 중세부터 저식 탐구의 장소가 사찰이나 교회에서 世俗的인 곳으로 옮겨졌는데 12~13세기 파리·캡브리지·옥스퍼드·볼로냐 등의 大學設立이 그 代表的 예이다. 大學의 시초가 된 이때부터 종교나 국가로부터 독립된 自由로운 學習過程(learning process)을 위하여 大學의 準獨立性이 보장되었으며, 학생연맹(a union of students) 또는 교수연맹(a union of professors)이라는 제도적 형태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도 대학의 準獨立性을 위하여 大學의 理事會는 일반시민(lay boards of trustees)으로 구성되어 있다. 教育機關으로서의 대학 조직은 16세기초에 이르러 급속히 늘어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教育企業(teaching enterprise)’으로 확립되었으며³⁾, 오늘날과 같은 知識 폭발의 시대에서도 지식의 전달인 教育은 大學의 중요 기능이 아닐 수 없다.

大學의 두번째 機能은 研究(research)이다. 19세기 이전까지는 교육 내지 강의가 大學의 基本機能이었고, 연구는 대학의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個人이 추구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발견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새로운 知識의 探究(a search for new knowledge)로 교수들의 관심이 돌아섰고 연구 자체가 大學의 한 目標가 되었다. 연구를 강조하는 대학 風土는 학생의 발전(progress)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실과 도서실, 전문 분야에서의 등로의 평가, 외부 연구 자금 등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⁴⁾ 새로운 진리의 발견을 강조하는 研究가 대학의 제1의 기능으로 된 경우 大學의 自律性 요구는 더욱 당연하고 ‘學

1) 金九, “나의 소원”, 白凡逸志(白凡 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 1971, 서울), p.10.

2) 教育의 自由와 구별하여 教授의 自由로 표시하기도 한다. 교육이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라면, 教授는 학생으로 하여금 전리에 대한 독자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내어 스스로의 전리 탐구를 가능케 하는 학술 활동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과정을 이루는 학술 활동이다. 教授의 自由는 연구 결과를 학생에게 露學함에 있어 국가나 社會의 諸勢力으로부터 學說上の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 教授內容의 自由, 教授 方法의 自由, 教材選擇의 自由 등이 대표된다.

權亨俊, “大學의 自由”, 教育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한국교육법학회, 1986), p.51.

3) James A. Perkins, *The University as an Organization: A Report for the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McGraw Hill Book Company, New York, 1973), pp.3~6.

4) *Ibid.*, pp.6~7.

問의 自由(academic freedom)'로 주장되어 오늘 날까지 대학의 전통으로 내려왔다. 대학의 自律性 또는 학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論理는 John Stuart Mill 의 「自由論」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그는 새로운 견해(opinion)를 탐험하는 것은 그 견해가 事實이건 虛偽이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 견해가 事實이라면 그러한 견해의 탐험은 시민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견해가 虚偽이더라도 市民으로 하여금 오류가 가져다 주는 사실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방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주장은 異見을 넓게 忍容하라는 自由民主社會의 핵심 원리이며 言論·出版의 自由로 制度化된다.

大學의 세번째 기능은 社會奉仕(public service)이다. 대학은 시민을 교육시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人力供給을 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사회 봉사라는 세번째 大學機能은 정부와 市民들의 大學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어 외부적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여러 壓力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대학의 自律性 내지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사회 봉사 기능과 調整되어 사회의 協力者(partnership)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 기능인 教育과 研究에 있어서 정부나 일반 시민은 필요한 資金을 提供만 하고 그 運用方法의 決定은 大學의 自律에 맡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은 정부나 시민의 능력 밖에 있으며 외부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⁶⁾

大學의 네번째 기능은 大學內 民主社會의 理想達成(achieving an ideal democratic community within the institution)이다. 이는 대학의 새로운 機能으로 대학의 기본적인 政策들이 그 구성원(교수·학생·직원)의 여망과一致되어야 하며 대학의 조직 및 운영이 민주 사회의 理想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학 조직의 구조 및 운영에 있어 전면적인 改革을 필

요로 하는 부분이다. 특히 학교의 중요 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되어야 하며, 대학 총장의 선출 방법은 어떠해야 하고, 理事會의 기능은 어떻게 변하여야 하는가 등의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요컨대 大學의 중요 기능인 教育 및 研究의 自由는 「學問의 自由(academic freedom)」로 대학의 本質을 이루고 歷史的으로 확립된 大學 自律性의 基本論理이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歷史的으로 힘든 투쟁의 產物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노예 제도를 반대하였다든지, 進化論을 주장하였다든지 또는 공산주의에 同調하였거나 충성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시민들이 그러한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여 있고 학문의 자유가 큰 위협을 당하곤 했다. 따라서 교수의 身分保障은 학문의 自由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 장치가 아닐 수 없다.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의 社會奉仕 기능에서 調整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정부나 市民들은 大學의 自律性을 존중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의 大學 自律性은 大學內 民主行政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3. 韓國 大學의 自律性과 設立 및 定員政策

한국 대학의 경우 제2장에서 살펴 본 대학의 基本機能과 관련하여 얼마나 自律性을 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자율성의 원리는 대학의 設立 및 定員政策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3장의 주장이다. 自由民主社會를 우리나라 政治體制의 기본으로 한 것이 불과 45년밖에 안 되듯이 대학의 歷史도 길지는 않다. 더욱기 그동안의 오랜 王政下의 權威主義, 日帝의 탄압 정치에 의한 복종 위주의 회일주의, 남북 분단으로 인한 끊임없는 전쟁 위협 그리고 6·25, 4·19, 5·16, 10·26, 5·17 등의 격변과 軍事文化 등이 한국의 政治·經濟는 물론 教育 부문에서도 自律性을 확립할 기회를 가

5) John Stuart Mill, *On Liberty*(edited by Currin V. Shields, Bobbs-Merrill Company, Indianapolis), 1956, pp.21~22.

6) Perkins, *op. cit.*, pp.10~11.

의 주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도 자율적인 運營의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고, 짧은 기간이나마自律性 확립을 위하여 진지한努力를 하지 못했음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의 기본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學習過程에서의 자유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研究의 자유에 있어서는 급진적이거나 일반인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異見(unpopular views)에 대해서는 政府나 시민은 물론이고 대학 구성원조차 이해는 키녕 탄압을 하곤 했다. 많은 교수들이異見의 차시로 身分을 박탈당하고 刑罰까지 받을 정도였다. 특히 대학의 새로운 기능으로 주장되고 있는 大學內 民主行政의 확립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행정에 대한 많은 不信 때문에 그 요구가 강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내 民主行政의 確立은 外部(특히 행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립에 先決되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大學內 많은 非理가 있을 경우 外部의 간섭을 쉽게 초래하고 그러한 약점 때문에 외부 압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西歐의 경우 학문의 자유가 오랜 전통으로 확립되었고, 제 4의 기능인 大學內 民主行政의 수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大學에 대한 많은 不信 속에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自律性을 동시에 확립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중요 정책이 政府의一方的인 결정과 指示에 의존하였고, 대학 스스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가 하는 깊은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 대학의 自律性 확립은 이제부터라도 착수되어야 하며,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서는 물론 大學設立 및 定員政策의 수립에서도 자율성이 중요한 基準이 되어야 한다.

大學의 설립 및 정원 정책은 대학의 社會奉仕 기능에서 볼 때 사회가 요구하는 労動人力의 供給이란 점에서 政府의 規制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高等教育에

대한 엄청난 教育熱 때문에 ‘高學歷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회적 副作用이 심각한 때에는 정부의 規制가 더욱 정당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은 정부의一方的 정책 결정이 낳은 產物일 수도 있다. 필자는 앞에서 지적한 自律性의 論理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大學設立 및 定員政策도 대학의 자율성이 제 1 차적 기준이 되어 좀더開放化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政策決定에 있어서 多元主義의 設計가 요청된다. 정책의 內容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회일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加外性이나 多樣性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加外性 設計 또는 多元主義의 설계는 지방 차치에 의한 관할권의 중복, 上·下間 또는 中央·地方間의 권한 배분, 부서간의 합의 등을 들 수 있으나⁷⁾, 教育政策에서의 多元主義는 특히 전문지식인의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 대학 설립 및 정원 정책에 관하여 행정부의一方的 결정이 아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시급한 과제이다. 大學教育에 있어서 학생 인구를 결정하는 일을 정부에서 獨占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특성과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선발·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바람직하다.⁸⁾

둘째, 大學敎育의 大衆化 現象으로 대학교육에의 접근이 더욱開放化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大衆化는 세계적 趨勢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產業化에 따른 고급 인력의 수요 증대, 개인적인 또는 文化的인 고등교육 욕구로 더욱 그리하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8천 명 수준에서 현재는 1백 40만 명 수준이 되고 있다.⁹⁾ 自由民主主義에서의 대학교육은 個個人間의 價值를 존중하는 철학에 근본을 두어야 하며 한 국가의 人的資源이 全體的으로(fully) 발전될 때 그 사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커 온 사람과 成長이 더딘 사람도 우리 사회

7) 李宗范, 國民과 政府官僚制(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pp.234~243.

8) 宋柄淳, “大學敎育의 大衆화와 高學歷失業”, 大學敎育, 42호(1989.11), p.33.

9) Ibid., p.28.

의 참여가 되어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교육에의 개방적 접근은 개인의 복지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 복지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¹⁰⁾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많은 고급 인력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대학교육의 機會擴大 政策은 高學歷 失業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高學歷 失業의 發生은 1980년의 졸업정원제 체택으로 대학생의 정원이 급증한 것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요 정책이 사회 產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공급의 미래 예측에 기초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독자적으로 결정·시행한 데 있는 것이다. 특히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政經 유착에 따른 大企業의 경제권 독점,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등은 勞動市場을 불안정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노동 시장의 不安定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정책과 결부되어 고학력 실업 문제를 초래한 것이다.¹¹⁾ 또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教育의 質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대학교육에의 접근(access)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 바로 입학을 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의 많은 학생들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을 거쳐 대학에 전학하여 성공한例가 상당히 있다.¹²⁾

셋째, 현행 大學入學의 중요 기준인 표준화된 시험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시험은 교육 프로그램의 적은 부분만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지, 교육에서 중요시 되는 학생의 动機(motivation), 책임감(commitment), 학습 의지(willingness to expand great effort in the learning process) 등은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화된 테스트는 교육에 대한 不信의 원인도 되며,

성공할 잠재력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¹³⁾ 잠재 능력이 있는 모든 個人에게 기회를 提供하는 것이 自由民主社會에서의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의 多樣性이 추구되어야 한다. 특성 있고 다양한 대학이 존재하므로 학습자와 일반의 다양한 대학교육에의 욕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¹⁴⁾ 특히 地方大學의 育成을 위하여 서울 中心의 정책 방향에서 지역간의 均衡發展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겠다.

4. 大學의 自己統制

지금까지 自由民主社會의 根本은 個人은 물론 사회 모든 집단이 自律性을 確立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教育과 研究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自律性 確立이 필수적인데, 한국 대학에서는 아직 그러한 경험도, 노력도 없었다는 반성을 해보았다. 따라서 대학의 設立 및 定員政策과 같은 대학교육의 중요 정책 결정도 정부의一方的決定이 아니라 대학이 自律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自律的 결정이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自由放任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制限이기도 하다.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自律이 他律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더우기 오랜 他律의 타성을 벗어나 새로운 自己規範을 설정하고 성실히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自由人'이며, 자유 민주 사회에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대학이 자율성을 확립하는 한 方案으로 自己統制(self-control)에 관하여 언급한다.

大學의 自己統制 개념은 自律의 개념 자체만으로도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더욱

10) Robert H. McCabe, "Equity and Quality in College Education: An Essential American Priority", *Contemporary Issues in Higher Education*(edited by J.B. Bennett and J.W. Peltason, MacMillian Publishing Co., 1985), pp.70~71.

11) 宋炳淳, 전계석, p.32.

12) McCabe, *op. cit.*, pp.83~89.

13) *Ibid.*, pp.78~79.

14) 宋炳淳, 전계석, p.33.

필요하다. 첫째, 대학교육의 大衆化에 따른 市民의 대학교육 質에 대한 不信이다.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교수들의 업적 또는 대학 내부의 제도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不信을 받고 있다. 둘째, 財政支援을 하고 있는 정부는 그러한 지원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대학 당국의 全權으로 여겨진 영역까지 간섭하게 된다. 셋째,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보다 연구 자금으로 뒷받침되는 商業的 연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과과정도 외부 연구 자금의 지원이 있는 특별 프로젝트 쪽으로 기울어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女性과 少數集團에 대한 형평 있는 대우가 사회 다른 집단보다도 대학에서 더 관심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학 스스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정부의 강압적인 간섭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이 분야에서 大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대초 大學 定員의 급증에 따른 교육의 質에 대한 不信, 정부의 완벽한 통제,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연구 자금의 편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제한, 대졸 여성의 취업 제한 등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이 自己統制를 하는 方法에는 두 가지 次元이 있다. 하나는 대학내 자체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대학으로 구성된 大學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 내지 통제이다. 大學內 自體統制는 自體評價研究(self-study)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학마다 機關의 성격이 다르고, 또 한 대학 안에서도 학문 분야별 학과마다 당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평가 연구는 多樣한 형태를 갖게 된다. 自體評價研究에는 다음 네 가지 方法이 있다. 대학의 機關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검토하는 狀況的(context) 평가, 프로

그램 자체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는 生產的(productive) 평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資源活用에 관한 方法을 평가하는 投入的(input)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과에서 행하고 있는 과정을 검토하는 過程的(process) 평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평가 방법이 繼續的으로 活用될 때, 대학이라는 기관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¹⁶⁾

大學의 자체 평가는 그 內容에 있어 量的評價와 함께 質的評價도 시도되어야 한다. 量的評價는 학생 등록률과 脱落率, 학급 규모와 코스 費用, 프로그램 졸업에 드는 비용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費用效果面에서 효과적이었는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지, 졸업하여 좋은 직업을 찾아 나가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量的評價뿐 아니라 質的評價도 대학 평가에서 중요시 되어야 한다. 물론 '質'은 捕捉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機關의 目的 및 프로그램의 目標, 學生學習, 教授의 업적, 교육과정과 支援體制에 초점을 둔 학문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는 세부 지표를 만들어 質的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시급한 質的評價의 對象은 교수의 연구 업적이다. 교수의 연구 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기초하여 身分保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事實定向主義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미 '교수 재임용' 제도가 政治적으로 惡用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수 연구와 質向上을 위한 自己統制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大學의 自體評價는 信賴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多樣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미국 네브라스카대학의 경우 대학교内外의 교수들, 교무 행정가, 대학 이사, 학생,

15) J.B. Bennett, E.H. El-Khawas, and R.M. O'Neill, "Self-Regulation within Postsecondary Education", *Contemporary Issues in Higher Education*(edited by J.B. Bennett and J.W. Peltason, Macmillian Publishing Co., 1985), pp.3~5.

16) L.R. Marcus, A.D. Leone and E.D. Goldberg, *The Path to Excellence: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ERIC Higher Education Research Report).

朱三煥 譯, 高等教育의 質 保障을 위한 大學評價(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pp.67~68.

17) 이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朱三煥 譯, 高等教育의 質 保障을 위한 大學評價, pp.73~83 참조.

州의회 의원, 주지사 대리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大學에 대한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여 장·단기 계획을 잘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外部 諮問家를 활용할 경우에도 훌륭한 학자로 인정받고 해당 분야 교육과정상의 문제와 傾向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¹⁸⁾

大學의 自己統制에는 여러 대학으로 구성된 大學 專門家 집단에 의한 평가도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관료적·중앙집권적 통제를 막으면서 각 양각색의 미국 학교의 質에 대한 일관적인 통제를 위하여 6개의 지역 평가 인정 기구가 발전되었다. 이들 기구는 評價認定(accreditation)을 통하여 지방 교육구나 州의 경계를 넘어 교육의 質에 대한 標準(standards)을 제공해 준다. 지역 평가 인정 기구의 活動은 학교의 自體研究(self-study)를 기초로 평가하는데 전 교직원이 교육의 실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주어진 자원 내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¹⁹⁾

大學의 自己統制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自體內의 평가 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가 중요 내용을 이루지만, 교수 자신의 행위 규범도 포함된다. 미국의 AAUP(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는 교수가 준수해야 할 규범(norms)을 천명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를 받아들였다.²⁰⁾

5. 맺음말

自由民主社會란 個人은 물론 社會諸集團이 自律性을 확립함을前提로 한다. 교육과 研究를 중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大學集團이 이 자율성을 가장 소중히 하고 沿革的으로 일찍부터 보장되어 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비로소 社會諸集團이 自律性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努

力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大學의 設立 및 定員政策 같은 중요한 大學 政策이 정부 한 쪽에 의하여 결정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多元主義 設計가 시급하다.

専門化되어 가는 오늘날의 僧報社會에서는 大學教育이 多樣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大學教育의 大衆化는 개인의 취업,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어 個個人 간의 價值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철학과 관련되며, 국가의 高級 人的資源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을 대폭 늘려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등을 통하여 大學教育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제도의 확대로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되겠다. 특히 產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여 高學歷失業者를 줄여야 할 것이다.

大學의 量的 張창과 아울러 대학이 중요시 해야 할 것은 大學의 質管理이다. 특히 대학의 質管理는 大學人 스스로 하는 自己統制方法에 따라야 한다. 스스로 택한 약은 써도 참고 먹듯이 大學 스스로 質管理를 위한 自體研究(self-study)가 대학自律性確保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社會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스스로의 刻苦의 努力 없이 대학의自律性確保는 요원한 과제이다.

이러한 自體評價를 제1차로 하고, 다양한 학교의 특성 및 質에 관한 전체적인 통제는 미국의 지역 평가 인정 기구와 같은 전문가의 評價決定(accreditatio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정 기구를 통하여 특히 地域間·계층간 또는 과정간의 大學層化現象을 시급히 조정하여야 한다. 학문 기관들이 內的 自己評價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質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學問的 領土라 할지라도 많은 財政支援을 하고 있는 政府는 責務性을 이유로 規制·介入

18) *Ibid.*, pp.62~67.

19) *Ibid.*, pp.62~67.

20) Bennett, El-Khawas and O'Neill, *op. cit.*, p.10.

을 언제든지 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결국 创意性과 多樣性을 姦縮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기본 기능이 학문의 자유를 侵害하게 된다.

끌으로 오늘날 새로운 大學의 機能으로 지적되고 있는 大學內의 民主行政을 위하여 대학 스스로 과감한 改革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부정 입학 등의 内部 非理가 있는 대학에서 어떻게 정부에 대하여 自律性을 요구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私立大學의 경우 財源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公開하여 정부의 財政支援을 요청한다든지 公開的方法으로 해결하여야 되겠다. 부끄럼 없는 깨끗한 大學行政과 大學의 機能에 대한 정기적인 自體評價로 대학교육의 質을 놓임없이 管理할 때, 그 구성원과 市民들로부터 信賴를 얻고 의부로부터의 自律性도 획득할 수 있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온 통제 위주의 대학교육 정책을 탈피하여 자기 규율에 의한開放的 질서 확립을 위해 대학 스스로 改革을 할 때가 되었다. *

〈参考文献〉

- 金九, 白凡逸志, 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 1971.

韓國教育法學會編, 敎育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 大學出版社, 1986.

李宗范, 國民과 政府官僚制,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朱三煥 譯, 高等教育의 質 保障을 위한 大學評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통권 37호~43호, _____, 학과별·계열별·대학별 대학
입학 정원(1971~1988), 1990.

金鍾詰, 韓國高等教育研究, 培英社, 1970.

姜潤哲·金鍾石·朱三煥, 大學敎育의 自律性 伸張을

위한改善方案, 충남대 교육발전연구소, 1990.

金正鉉, 오늘의高等教育, 一潮閣, 1980.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고등교육분과위원회), 外國高等教育의 實際와 改革動向, 1973.

Edwards, Harry T. and Nordin, Virginia D., *Higher Education and the Law*,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1979.

Perkins, J.A., *The University as an Organization: A Report for the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McGraw Hill, New York, 1973.

Mill, John S., *On Liberty*(edited by Currin V. Shields), Bobbs-Merrill Co., Indianapolis, 1956.

Folger, John K., Astin, Hellen S. and Buyer, Alan E., *Human Resources and Higher Education*,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70.

Bennett, John B. and Peltason, J.W., *Contemporary Issues in Higher Education: Self-Regulation and the Ethical Roles of the Academy*, MacMillian Publishing Co., New York, 1985.

Bowen, Howard R.,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1980.

Prange, W. Werren, Jowett, David, and Fogel, Barbara, *Tomorrow's Universities: A Worldwide Look at Educational Change* Westview Press, Boulder, 1982.

Watts, A.G., *Diversity and Choice in Higher Education*, Routledge & Keyan Paul, London, 1972.

Smith, H., *The Purpose of Higher Educ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1955.